의안번호	제2866호
의 결	2024
연 월 일	(제 회)

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

제 출 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4. 11. 14.

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2866호

제출연월일: 2024. 11. 14. 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1. 제정이유

공공기관과 군민의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안 제3조)
- 나.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라.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환경우수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사.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
- 나. 예산조치: 2025년 당초예산 편성예정
- 다. 합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· 특이사항없음[복지지원과-22169(2024. 4. 24.)]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 564호
 - 가) 예고기간: 2024. 3. 25. ~ 2024. 4. 15.(21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 · 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고성군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1회용품"이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 - 2. "다회용품"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.
 - 3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가. 「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 및 사업소, 읍·면
 - 나. 고성군의회
 - 다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한 기관 중 고성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·출연한 기관
- 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고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고성군민(이하 "군민"이라 한다) 의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(이하 "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
 - 2.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
 - 3. 제8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지정 및 홍보
 -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, 그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6조(1회용품 사용 제한 등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.
 - 1.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·외 행사 및 회의
 - 2. 제1호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
 - 3. 그 밖에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 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

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

- 제7조(교육·홍보 등)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
 - 2.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
 - 3.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(환경우수업소 지정 등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(이하 "우수업소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 - 1.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갂한 경우
 - 2.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
 -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
 - 2.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
 -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우수업소 홍보에 관한 사항
- 2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포상)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 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고성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 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교육 및 홍보(안 제7조)
- 포상(안 제9조)
- 가. 소요예산: 5,000천 원(연간)
 - (교육 및 홍보) 홍보전단지 1,000천 원*1회=1,000천 원 홍보 물품구입 1,000천 원*1회= 1,000천 원
 - (포상) 환경우수업소 지정 1,000천 원*3개소=3,000천 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○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○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작성자: 환경과장 최정 란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제10조(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- 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
- 2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·가공업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종
- 3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
- 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- 5.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
- 6.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
-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- 1.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 물을 제공·판매·배달하는 경우
- 2.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
- 3.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조(1회용품) 법 제2조 제1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
1회용품(제5조 관련)

- 1. 1회용 컵·접시·용기(종이, 금속박,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)
- 2. 1회용 나무젓가락
- 3. 이쑤시개(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)
- 4. 1회용 수저 · 포크 · 나이프
- 5. 1회용 광고선전물(신문·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)
- 6. 1회용 면도기 · 칫솔
- 7. 1회용 치약·샴푸·린스
- 8. 1회용 봉투·쇼핑백(환경부장관이 재질, 규격, 용도,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 시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9. 1회용 응원용품(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, 비닐방 석 등을 말한다)
- 10. 1회용 비닐식탁보(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)
- 11. 1회용 빨대, 1회용 젓는 막대(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)
- 12. 1회용 우산 비닐